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 
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# 심사보고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696 |
|----------|------|

2021년 9월 2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1. 8. 11.
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1. 8. 19.

4. 상정일자 :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9. 1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- 원안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의승)

- 동 기금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, 재무활동의 1,636.5% 규모인 6억 5,900만원을 변경하려는 것임
- 수입계획 변경 내역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수입계획 중 '예치금 회수'를 2억 4,500만원에서 9억 500만원으로 6억 5,900만원 증액하였고
- 지출계획 변경 내역은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'예치금'을 4,000만원에서 6억 9,900만원으로 6억 5,900만원 증액한 것임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696호, **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#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# (1) 제안이유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2021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# (2) 주요내용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2억 4,600만원에서 9억 500만원으로 6억 5,900만원 증가하였고,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「예치금」 금액이 당초 4,000만원에서 6억 9,900만원으로 6억 5,900만원 증가하였음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| 당 초 (A) | 변 경 (B) | 증 감 (B-A)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계         | 1,321   | 1,980   | 659       |
| 예 탁 금 회 수 | 510     | 510     | -         |
| 예 치 금 회 수 | 246     | 905     | 659       |
| 이 자 수 입   | 295     | 295     | -         |
| 기 타 수 입   | 269     | 269     | -         |

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| 당 초 (A) | 변 경 (B) | 증 감 (B-A)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계         | 1,321   | 1,980   | 659       |
| 비 용 자 사 업 | 1,177   | 1,177   | -         |
| 용 자 성 사 업 | 100     | 100     | -         |
| 기 본 경 비   | 3       | 3       | -         |
| 예 치 금     | 40      | 699     | 659       |

### 3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6억 5,9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(6억 5,900만원)으로 반영하고, 수입 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6억 5,900만원)에 지출계획 하 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1)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 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 록 정하고 있음
  - 아울러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2)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 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행정안전부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0. 7), p.43, p.302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이 당초보다 1,636.5%, 6억 5,900만원 증액요청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지출계획(안)

(단위 : 백만원, %)

| 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    | 당 초<br>( A ) | 기금운용<br>계획변경안<br>( B ) | 증 감<br>(C=B-A) | 증 감 륜<br>(D=C/A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| 1,320        | 1,980                  | 659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| 1,277        | 1,277                  | 1,277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일반 예산 ( 재 무 활 동 )        | 40           | 699                    | 659            | <b>1,636.5</b>   |
| 보 전 지 출                  | 40           | 699                    | 659            | 1,636.5          |
| 여 유 자 금 예 치              | 40           | 699                    | 659            | 1,636.5          |
| 행정 운영 경비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서울특별시, 어르신복지과-15576 ('21. 8. 24) 재구성

-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의 조성액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

- 동 계정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3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예치후 필요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 제5조(노인복지계정)

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

1.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노인단체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
7.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2021. 9. 1.)

#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69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2021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246백만원에서 905백만원으로 659백만원 증가하였고,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「예치금」 금액이 당초 40백만원에서 699백만원으로 659백만원 증가하였음
- 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 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   | 당초(A) | 변경(B) | 증감(B-A)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
| 계     | 1,321 | 1,980 | 659     |
| 예탁금회수 | 510   | 510   | -       |
| 예치금회수 | 246   | 905   | 659     |
| 이자수입  | 295   | 295   | -       |
| 기타수입  | 269   | 269   | -       |

### 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   | 당초(A) | 변경(B) | 증감(B-A)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
| 계     | 1,321 | 1,980 | 659     |
| 비용자사업 | 1,177 | 1,177 | -       |
| 용자성사업 | 100   | 100   | -       |
| 기본경비  | 3     | 3     | -       |
| 예치금   | 40    | 699   | 659     |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유형 (☎ 2133-7407)